

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			처리기간
			7일
①업소명(상호)		②영업의 종류	
③영업 형태		④영업신고번호 (신고일자)	
⑤영업자 성명		⑥생년월일	
⑦소재지	(전화:) ※ 인근 학교:		
⑧영업장 면적			
⑨주요 판매식품			
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
			수수료
			없음

※ 작성요령

1. ②영업의 종류

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같은 조 제5호나목2)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)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,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,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

나. 가목 외에 학교 매점, 슈퍼마켓, 편의점, 문방구,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·판매하는 업소

2. ③영업 형태: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 등

3. ⑧영업장 면적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말합니다.

4. ⑨주요 판매식품: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중 주로 판매하는 식품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